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
- 이렇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2020년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시설과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바,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